

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76
----------	------

2021. 06. 16
도시계획관리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1. 박순규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(2021. 6. 16. 상정·의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박순규 의원)

□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(다시세운광장)은 일반적인 평면 광장과 달리 광장 바닥면과 대지 바닥이 최고 높이차 3.6m의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물인 반면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시설물안전법’) 제1종, 제2종, 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음.
- 「시설물안전법」 1~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

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, 난간 및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9조제1호의2)

Ⅲ. 검토보고 요지 (조정래 수석전문위원)

- 이 개정조례안은 세운초록띠광장¹⁾(3,748.3m²)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광장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.

<광장 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(제9조)>

현행	개정안
<p>시장이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 할 수 있는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▶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	<p><u><신설>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u>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

1) "세운초록띠광장"이란 종로구 장사동 116-3 일대 광장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, 해당구역 지상의 부대 시설물 전체를 의미함(조례 제2조제1호).

- 현행 조례에서 광장의 관리권자²⁾인 시장이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경우는 ‘광장 사용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’와 ‘규칙³⁾으로 정하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’로 규정하고 있으나, 광장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·정지시킬 수 있는 조문은 없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광장의 시설물이 노후 또는 파손되어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이라 사료됨⁴⁾.
- 다만, 이 조례안은 2009년 11월 제정되었으나, 2014년 3월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⁵⁾되면서 도시계획시설 “광장(경관광장)”(‘07.1 결정)⁶⁾에서 “공원(문화공원)”으로 변경·결정⁷⁾ 되었음. 따라서 이 공원

2) 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.

3) 제2조(준수사항) 「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9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허가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.
2. 허가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3.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.
4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.
5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6. 음향사용 기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7.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
4) 현재까지 안전상의 이유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허가가 변경 또는 취소·정지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.

5) 2014.3.27.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(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)

은 「공원녹지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에 따라 공원 관련 소관부서에서 그 관리⁸⁾가 이루어져야 하나, 현재 이 광장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.

공원 변경결정의 사유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시 「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」(’06.6.30 제정)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의무 확보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고, 이후 2015년 수립지침 변경으로 세운 광장(공원)은 공원확보 의무대상 부지에서 제외⁹⁾되었으므로 현재 광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	
				기정	변경	변경 후
폐지	광 장	경관광장	종로구 장사동 116-3번지 일원	9,539	감)9,539	
신설	공 원	문화공원	종로3가 143-1번지 일원	-	증)3,748.3	3,748.3

6)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20호

7)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·고시 되었을 때에는 그 고시일에 도시·군 관리계획(광장, 공원등)이 결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.

8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) 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공원수탁관리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·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6조(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)

① 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 하는 자 또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관할 공원관리청에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9)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시 공원확보 비율

장의 실질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현 도시계획시설(공원)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.

- 참고로, 세운초록띠광장은 광장 상부인 '다시세운광장'과 하부인 '세운홀'로 구성되어 있는데, '다시세운광장' 및 '세운홀'은 조성이 완료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사용허가 건수 및 사용료의 징수액이 점차 증가하다가, 2020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허가건수가 급감하고 있음. 광장 사용허가와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구간 시설물 관리는 도시재생실(역사도심재생과)에서 소관하고 있음.

(단위: 건, 천원)

구분	2018년		2019년		2020년		2021년		계	
	허가건수	사용료	허가건수	사용료	허가건수	사용료	허가건수	사용료	허가건수	사용료
계	30	3,049	45	8,588	11	584	7	2,704	93	14,925
다시세운광장	10	1,961	7	5,289	2	69	1	2,409	20	9,728
세운홀	20	1,088	38	3,299	9	515	6	295	73	5,197

자료: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내부자료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VII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당 초	변 경('15.12.02.)
전체 촉진구역면적 5% 또는 세대당 3㎡ 중 큰 면적 이상 확보	해당 구역면적이 5만㎡ 이상인 경우 개발부지면적의 5% 이상 또는 세대당 2㎡ 이상 중 큰 면적 확보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